

제 2 5 9 회 임 시 회
제1차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4월 17일(火)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기 봉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2007년 4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가.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충북체육 발전과 스포츠행정 선진화를 위한 현재의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과
- 나. 한방과 양방의 협진체제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를 신축하며
-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관련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취득하려던 (주)삼익 소유의 공장부지 매입계획을 유치대상 기업에서 직접 매입함에 따라 취득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산취득 :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38-7번지의외 1필지

- 사업규모 : 1,468m²(445평) - 증축(수직 3층→ 5층)
- 사업기간 : 2007.4~12(9개월간)
- 사업비 : 1,500백만원

나. 재산취득 :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
(환자쉼터 녹지공간)
- 사업규모 : 지하1·지상 3층 2,676m²(809평)
- 사업기간 : 2007. 5~2008. 10(2년간)
- 사업비 : 5,031백만원
 - 국비 1,311 · 도비 2,489 · 의료원 1,231

다.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계획 취소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일원
- 매입규모 : 2필지 108,697m²(32,880평)
 -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공장용지, 98,905m²
 -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313번지, 공장용지, 9,792m²
- 사업기간 : 2007. 3 ~ 4(2개월)
- 사업비 : 33,000백만원(도비 16,500 청주시비 16,500)

4.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청주시 방서동 소재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인 건물은 장애인

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의 숙원사항인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아울러 1995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됨.

최근 들어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로 회관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더욱이 두 단체는 2억 2천만원(생활체육회 120,000천원·장애인체육회 100,000천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회관건립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음.

다만, 본 건 심사를 위해서는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 그리고 건축면적 지상 2층 445평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검진센터 신축의 건은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월 8일 한방진료부 설치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됨.

다만, 한방진료부 설치를 위한 국도비 지원액 26억 2,200만원(국비 1,311백만원·도비 1,311백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도비 11억 7,8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바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청주의료원은 공공성과 독립경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바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는 합목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방진료부 운영이 의료원 경영에 미치는 경영분석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다. 대규모 기업투자유치용 공장부지 매입계획 취소

본건은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55번지 등 2필지 32,880평 공장부지 취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반도체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원안 의결되었으나 유치대상기업인 (주)하이닉스가본 건 공장부지를 직접 매입함에 따라 취득계획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견없음.

붙임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